

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2. 2. 15 선고 2021가단57450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전 문

원 고 대한민국

피 고 1. A

2. B

변 론 종 결 2022. 1. 25.

판 결 선 고 2022. 2. 15.

주 문

1. 익산시 C 답 673.7㎡ 중 각 1/2지분에 관하여,
가. 피고들과 D 사이에 2018. 6. 27.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,
나. 피고들은 전주지방법원 익산등기소 2018. 6. 29. 접수 제27217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
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

별지 1 ‘청구원인’ 기재와 같다.

2. 적용법조

가. 피고 A에 대하여: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(자백간주 판결)

나. 피고 B에 대하여: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(공시송달에 의한 판결)

판사 한진희

별지